

춘천지방법원 2015. 7. 21 선고 2015가단341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5. 7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C 대 331.4m²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사무실 24m², 같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나) 부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1.6m²를 각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고, 2015. 1. 1.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정하경

별지